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9
----------	-------

제출년월일 : 99. 5.

제 출 자 : 김제시장

1.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개선대책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과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2.주요골자

-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요구하던 각서를 폐지(안 제5조 제3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대상 범위 신설(안 제18조의2·제18조의3)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 개정(안 제21조제2항)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규정 개정(안 제22조의2·제22조의3)
- 대부료 등의 납기 기일 및 연체요율 개정(안 제25조·제27조)
- 수익계약 매각범위 및 매각대금의 감면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제35조의3)
- 청사의 설계시 지역사회에의 표상인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규정을 폐지(안 제43조제2호)

3.참고사항

-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의2·제95조·제96조·제100조
- 전북회계 13300 -2226(98. 8. 26)호 및 전북회계 41320 - 3073(98.11.10)호와 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 준칙안
- 입법예고('99. 4. 1 ~ 4. 20)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

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1조제2항중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토지”를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
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
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
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
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
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
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 및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인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

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 용지내의 재산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6조중 “국장·담당관·과장”을 “시설관리사”로 한다

제47조제3호중 “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별표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0년이내	4%
-----------------------------------	-------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③(매각대금의 감면) 제35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금) ①(생략)</p> <p>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②(생략)</p> <p>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 ⑤(생략)</p>	<p>제5조(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금) ① (현행과 같음)</p> <p>1. -----부동산시가표준액-----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제9조(재산 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p>	<p>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출구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8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p>

현행	개정안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략) 1. ~8 (생략) (신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과 이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균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이 3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생략)</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 ⑤(생략)</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u></p> <p>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u></p> <p>5. <u>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u></p> <p>6. <u>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u></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p> <p>9. <u>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u></p> <p>②----- ----- 매각대금 잔액 ----- -----</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p> <p>②----- ----- 토지시가표준액 ----- -----</p> <p>③ ~ ⑤(현행과 같음)</p> <p>⑥-----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에 한한다)----- -----</p> <p>(삭제)</p>

현행	개정안
(신설)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신설)	<p>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신설)	<p>제22조의3(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현	행	개	정	안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사업</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생략)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⑤(생략)</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 <u>사. 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u></p> <p>제23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u>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u> ----- ----- ⑤(현행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 ~ 3. (생략) (신설)</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 -----</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p> <p>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p>

현	행	개	정	안	안		
<p>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 각호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②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금)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②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 ② ~ ③(삭제)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35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계도·계구거, 계제방으로서 동일인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p>	<p>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④----- -----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u> -----</p> <p>제35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현행	개정안
<p>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신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르 한다.</p>
(신설)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직할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신설)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 및 시·군의 읍·면에서는 700제곱미

현행	개정안
	<p>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계도·계구거·계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팔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제35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신설)

연	행	개	정	안
(신 설)				<p>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u></p>
(신 설)				<p>3. <u>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u></p> <p>4. <u>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u></p> <p>② <u>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인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신 설)				<p>③ <u>연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1. <u>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u></p> <p>2.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u></p> <p>3. <u>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p> <p>④ <u>연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1. <u>의·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u></p> <p>2. <u>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u></p> <p>3. <u>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p> <p>4.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u></p> <p>5.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3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u> 3. ~ 7. (생략) <p>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국장·담당관·과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3급관사 : <u>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u> <p>제53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u> 2. <u>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 3.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가의 재산</u> 4. <u>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u> <p>제43조(청사의 설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p>제46조(정의) ----- -----<u>시설관리사</u>----- ----- -----</p> <p>제47조(관사의 구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u>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u> <p>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 2. <u>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3. <u>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p>②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u></p> <p>1. <u>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 2. <u>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p> <p>[별표] 매각대금분할납부대상 및 적용기간 1. ~ 3(생략) 가. ~ 아(생략) <u>(신설)</u> 4. ~ 8(생략)</p>	<p>(삭제)</p> <p>[별표] 매각대금분할납부대상 및 적용기간 1. ~ 3.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u>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0년 이내, 4%</u> 4. ~ 8. (현행과 같음)</p>